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3
----------	------

2013년 7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류경기 행정국장)

가.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장 관용차량 직접 정비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추가(안 제4조).

2)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추가(안 별표 4).

- 지급대상 :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지급액 : 25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안전행정부(지급액 승인) : 협의완료
- 2)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동의
- 3)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4)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 5)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대상
-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7)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3. 5. 2. ~ '13. 5. 22.) : 제출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 제7호라목 및 사목----- -----.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액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	250,000원	----- ----- ----- ----- 사람	250,000원
<신 설>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이미 장려수당을 지급(25만원)해 오던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외에 '특장관용차량 정비업무수행자'에게도 장려수당(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장려수당을 받게 되는 공무원은 서울시차량정비센터에서 차량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원 43명(2013년 6월 기준, 자격증 소지한 기술기능직 39명, 기술기능직 4명)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정비원에 지급될 장려수당은 연간 1억 2천 9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직급별	현원	자격증 보유자수			
		계	자동차 검사정비	용접·중기	기타 기계분야
계	39	33	17	7	9
기계기능6급	6	4	4	-	-
기계기능7급	13	12	4	2	6
기계기능8급	20	17	9	5	3

- 정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장려수당이 규정에 신설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 표와 같음.

추진경위
① 2002년 3월 : 직원 처우 개선방안으로 「장려수당 신설요구」 (차량정비사업소→본청 환경관리실)
② 2009년 10월 : 노조와 대정부 교섭 시 행정안전부에 장려수당 규정 개정 요구 (차량정비센터 노조요구 반영)
③ 2010년 7월 : 행정1부시장 주최 노조와 부시장 오찬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차량정비센터 장려수당 신설 요구
④ 2010년 11월 : 「찾아가는 인사상담」 에서 직원들 고충 및 의견 수렴
⑤ 2013년 6월 : 대통령령 규정 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중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7.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u>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u>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 차량정비센터는 종전에는 소형차량을 포함한 전 행정차량을 대상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했으나, 2006년 1월 조직개편(소장 4급 → 5급, 정원 112명 → 56명)에 따라 정비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정비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구·사업소·소방서 등의 대형 특수장비를 대상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 정비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노동이 수반되는 도장 작업과 오일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혹한기와 혹서기에도 외부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바, 서울시 기관 중 기피부서로 분류되고 있다고 함.

▶ 정비대상 장비

계(대수)	청 소 차 량			소방차량	특장화물차량	건설기계
	수집·수집용	도로청소차	기 타			
4,279	1,902	392	418	674	731	162

▶ 정비업무 추진실적

구 분		계	청소차량	소방차량	대형 및 특수 (건설기계 등)	부품공급
2012	대 수	3,106	1,451	125	805	725
	금 액 (백만원)	3,146	1,519	52	444	1,131

차량정비센터 애로사항

- ① 대형 특수차량의 정비에 따른 위험성 상존 및 노동강도 심화되어 있음. 청소차량의 생활쓰레기 등 역겨운 악취에 상시 직접 노출되어 있음.
- ② 정비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오일 작업 상시화 및 장비 청결을 위한 도색 작업 등으로 작업환경 열악함.
- ③ 극심한 육체적 노동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 및 분진 등에 의한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음.
- ④ 살수차, 진공흡입차, 사다리차, 제설차 등 고가의 특수장비 정비를 위한 개개인의 고난도 기술축적이 필수적임.
- ⑤ 혹한기, 혹서기에도 외부에서 작업을 실시함.

○ 본 개정안은 정비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규정은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직과 정비업무를 맡지 않는 기능직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 정비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2010년 기준 정비업무 추진실적이 3,072대인 바, 평일(249일) 기준 하루 평균 12대를 정비한다고 볼 때 정비원 43명을 3인 1조 형식으로 구분할 경우 1조당(3명 정비원) 하루 평균 0.9대의 차량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음.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정비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7호라목”을 “제7호라목 및 사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	250,000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u>제7호</u> <u>라목</u>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u>자</u></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5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신 설〉</td> <td></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u>자</u>	250,000원	〈신 설〉		<p>제4조(장려수당) ----- <u>제7호</u> <u>라목 및 사목</u>----- ----- -----.</p> <p>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 <u>사람</u></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5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u>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u></td> <td></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 <u>사람</u>	250,000원	<u>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u>	
지급대상	지급액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u>자</u>	250,000원												
〈신 설〉													
지급대상	지급액												
----- <u>사람</u>	250,000원												
<u>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장관용차량 직접 정비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추가(안 제4조 및 별표 4)
 - 지급대상 :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 지급액 : 월 25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급대상 인원이 43인으로 연 129,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며, 향후 차량정비센터의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정비인원이 증가하거나 지급액이 인상되지 않는 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국 인사과 최선아(2133-5726)